

한국인권학회 회장선거관리규칙

제 1 조(목적)

본 규정은 인권학회 회장의 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선거관리위원회)

회장선출 및 이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(이하 관리위원회)를 둔다.

제 3조(구성)

-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학회 회장이 지명하는 약간 명의 회원으로 구성한다. 관리위원장은 전임 회장 중 1명을 회장이 위촉하며, 간사는 총무이사가 겸임한다.
- ②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 4 조(직무)

- ① 관리위원장은 관리위원회를 대표하며 관리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,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선거에 관한 제반 업무를 보고하고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.
- ② 관리위원장은 총회에서 선거사무를 관장하는 임시의장이 된다.
- ③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관리위원장을 보필하고 공정히 선거관리를 하여야 한다.

제 5 조(의사) 관리위원회의 의결은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6 조(관리위원회의 임무)

관리위원회는 본 규정에 특별히 정하는 이외에 다음의 임무를 가진다.

- ① 입후보자의 자격심사
- ② 선거인명부의 작성 및 확인
- ③ 총투표권수의 확정
- ④ 선거운동방법의 결정
- ⑤ 선거공보 발행
- ⑥ 투표용지 양식 결정 및 투.개표방법 결정
- ⑦ 투.개표의 관리
- ⑧ 당선자의 확정 보고
- ⑨ 선거에 관련된 기타사항 결정

제 7 조(문서발송)

선거에 관하여 관리위원회가 통지하는 사항은 관리위원장의 명의로, 문서로서 행하여야 한다.

본 규칙은 총회에서 채택 직후 바로 시행한다.